

1. 개정이유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설치기준 적정성 재검토주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08호, 2021. 6. 10. 공포, 2022.12. 11. 시행)됨에 따라 세부 처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기준 개편(별표 5의2)

- 1) 시행령 별표1의3 개정으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에 추가·삭제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기준을 개편함.
- 2) 개인사육이 가능한 양서류·파충류 중 일부종에 대해 안전장치 기준(안전펜스 등)을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수질 및 수온 유지장치 등)을 추가함.
- 3) 사육시설 설치기준 적용 예외 시설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치료기관, 몰수 또는 긴급보호조치되는 개체의 임시보호시설 등을 추가하여 사육개체수가 일정하지 않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적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폐사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3조)

1) 양도·양수시 사용목적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상업적 목적인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상업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폐사신고시 수입허가증 등 입수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서류가 밀수 개체의 수입허가증으로 둔갑하여 부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다.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합리화(안 제52조, 별표12)

1)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며, 재산 피해를 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정지 3개월에서 면허취소까지 순차적으로 처분하도록 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

2) 유해 야생동물 포획결과 미신고시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취소 등 처분기준을 마련함.

3) 제1종 수렵면허 발급 및 갱신에 필요한 제출서류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의 발급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제2종 수렵면허 관련 제출서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삭제하며, 제1종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 동시에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수렵면허 갱신 관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킴.

라.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개정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별지 제17호, 제20호의2, 제20호의3, 제25호, 제26호, 제49호, 제50호서식)

1) 영문 오기를 정정(별지 제17호서식)하고, 업무의 위임에 따라 서류 발급기관장을 변경(제20호의2, 제20호의3서식)함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폐사 신고(별지 제25호, 제26호서식), 수렵면허 신청·갱신신청시(별지 제49호, 제50호서식) 제출하는 서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별지서식의 제출서류 설명에도 이를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7. ~ 9.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규제 강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계획서, 양도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폐사”를 “사진, 영상 등 폐사”로, “사진”을 “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입허가증 등 폐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5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을 “발행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소견서”를 “소견서(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종 수렵면허와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있고 한 종의 수렵면허 갱신 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다른 종의 수렵면허도 이 기간 내에 함께 갱신신청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을 “발행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나목 중 “소견서”를 “소견서(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갱신하는 경우 두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시기가 먼저 도래한 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2)를 3)으로 하고, 같은 란(중전의 사목2)) 사목3)(중전의 사목2)) 위반사항란 3) 중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란 사목3)(중전의 사목2)) 근거 법령란 중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에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의 2제1항제 2호	경고	허가취소			
별표 12 제2호거목3) 위반사항란 3) 중 “수렵 중”을 “수렵 또는 법 제23						

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1.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먹는물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격리시설, 월동시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온도, 습도, 조명(자연광 포함) 등을 모든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실내·외,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3) 사육시설등록자는 수생종의 경우 수영장과 마른 땅을(고래류 제외), 영장류의 경우 수직·수평 이동 가능한 입체구조물을, 고양이과의 경우 바닥보다 높은 위치의 휴식공간을 각각 제공하는 등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잠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동물 건강관리

- 1) 수의적 프로그램, 사후부검, 수의적 기록, 격리·검역 및 질병관리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육시설등록자는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사육시설 청소 등 사육시설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2) 수의적 처치에 관한 기록에는 예방의학, 임상치료와 수술, 사전 병리검사, 사후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3) 건강검진은 종별로 검사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라. 행동관리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 동물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일간 행동평가양식을 만들어 각 개체의 이상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기록(사육일지 등)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 3)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사 또는 사람과 지나친 접촉으로 인하여 대상동물이 사람과 친숙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지정 사육사를 지정하여 안정되고 장기적인 관리를 유지한다.
- 2)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관리 점검대장을 비치하는 등 정기적으로 시설과 안전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3) 사육시설등록자는 안전프로그램 및 안전시설의 평가, 안전문제를 처리한 결과를 문서화하고, 확인된 모든 안전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과 접촉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이루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육시설등록자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동물을 격리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6) 야외 방사장 등 실외 사육시설은 생물종의 탈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가. 포유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 크기)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영장목	고릴라, 사자꼬리원숭이, 침팬지, 올리브개코원숭이, 큰긴팔원숭이, 오랑우탄, 다이애나원숭이, 맨드릴	- 넓이 31.5㎡, 높이 3m	42%
	토크원숭이, 히말라야원숭이, 일본원숭이, 동부콜로부스, 필리 핀원숭이(게잡이원숭이), 망토 개코원숭이, 검은벚긴팔원숭이,	- 넓이 11.6㎡, 높이 2.5m	42%

	흰손긴팔원숭이, 검은이마거미원숭이, 검은짧은꼬리원숭이, 그리벳원 숭이, 돼지꼬리원숭이, 사바나원 숭이, 세줄무늬올빼미원숭이, 브 라자원숭이, 알락꼬리여우원숭 이, 보닛원숭이, 모나원숭이, 검 은머리카푸친		- 넓이 5.3m ² , 높이 3m	35%
	목화머리타마린, 비단마모셋, 순 다로리스, 흰머리카푸친, 검은술 마모셋		- 넓이 2.8m ² , 높이 2.5m	35%
	다람쥐원숭이속		- 넓이 1.6m ² , 높이 2.5m	35%
	코끼리목	아시아코끼리	- 넓이 35m ² , 높이 3m - 야외 방사장 넓이 125 m ²	70% (야외방사장 35%)
식육 목	곰 과	말레이곰	- 넓이 10.5m ² , 높이 2.5m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반달가슴곰, 아메리카검정곰	- 넓이 21m ² , 높이 2.5m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불곰	- 넓이 32m ² - 방사장에 웅덩이 설치 권장	35%
	고 양 이 과	치타	- 넓이 24.5m ² , 높이 2.5m	35%
		사자, 호랑이	- 넓이 14m ² , 높이 2.5m	35%
		스라소니	- 넓이 8m ² , 높이 2m	35%
		퓨마	- 넓이 8.4m ² , 높이 2m	35%
		재규어, 표범, 설표	- 넓이 14m ² , 높이 2.5m	35%
	족 제 비 과	작은발톱수달	- 육상 : 넓이 5.3m ² , 높이 2m - 수영장 : 넓이 2.1m ² , 깊이 0.6m	35%

	물 개 과	남아메리카물개	- 육상 : 넓이 3.5m² - 수영장 : 표면적 14m², 깊이 1.5m 이상	35%
소목		바라싱가, 과나코, 흰오릭스	- 넓이 35m² - 높이 3m	35%
		마르코염소, 목도리페커리	- 넓이 14m² - 높이 2m	35%
말목		몽고야생말	- 넓이 35m ² , 높이 2m	35%
고래목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 남방큰돌고래	- 수표면 면적 84m ² , 깊이 3.5m 이상	35%

나. 조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 크기)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매목	참매, 말뚝가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붉은허벅지말뚝가리, 달마수리, 독수리, 큰콘돌	- 가장 큰 개체 날개폭의 3배의 길이 및 너비, 날개폭 2배의 높이	길이 50%, 너비 25%
파랑새목	붉은코뿔새	- 넓이 5.3m ² , 높이 2m	35%

다. 파충류

종류	국명	1 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 크기)	한 마리 추가 시 증가 넓이
악어목	알리게이터악어과 전종 (Alligatoridae spp.) 크로커다일악어과 전종 (Crocodylidae spp.)	- 사육시설 내에서 개체 이동과 선회가 가능한 넓이(순수한 바닥 면적 기준) - 육상부의 가로, 세로 길이는 기준 크기의 100% 이상 - 수면부는 수심 50cm 이상, 면적은 육상부 면적의 60%	25%

	인도악어과 전종 (Gavialidae spp.)	이하(수면부 면적은 육상부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개방형 사육시설의 경우 안전 펜스 높이는 1.5m 이상 * 수면부에 수온과 수질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자연채광이 확보되어야 하며 발이나 다리에 부담이 없는 부드러운 바닥재(모래, 쿠션 재료)사용 <기준 크기> - 제3호(기준 날개폭 및 기준 크기) 참고 - 그 외 좋은 최대 성체 크기 적용	
거북목	돼지코거북 악어거북 남생이	- 기준 크기의 등갑장 3배 길이, 등갑폭 2배의 너비 - 몸을 말릴 수 있는 노출부 설치 - 수질 유지를 위한 여과장치 설치 <기준 크기 > - 제3호(기준 날개폭 및 기준 크기) 참고	25%
뱀목	코브라과 전종 (Elapidae spp.)	- 가로 1.2m, 세로 0.6m 이상 * 폐쇄형 사육시설로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 설치 * 온도 및 습도 조절 장치 설치	10%
	그물무늬왕뱀	- 가로 2.5m, 세로 1.2m 이상 * 폐쇄형 사육시설로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 설치	35%
	미얀마왕뱀	- 가로 1.2m, 세로 0.5m 이상 * 폐쇄형 사육시설로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 설치	

	왕뱀	- 가로 2m, 세로 1.2m 이상 * 폐쇄형 사육시설로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 설치	
	그린아나콘다	- 가로 1.5m, 세로 1m 이상 * 폐쇄형 사육시설로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 설치	
	노랑아나콘다	- 가로 1.25m, 세로 1m 이상 * 폐쇄형 사육시설로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 설치	
	텐메릴보아구렁이	- 가로 0.4m, 세로 0.3m 이상 * 폐쇄형 사육시설로 출입구에 탈출방지 시설과 자물쇠 설치	10%
	살모사과 전종 (Viperidae spp.)	- 가로 1m 이상 - 세로 0.5m 이상 * 폐쇄형 사육시설로 탈출 방지 시설 설치 * 온도 및 습도 조절 장치 설치	10%
도마뱀목	악어도마뱀, 물왕도마뱀 그린이구아나	- 가로 1.5m이상, 세로 1m 이상 * 충격에 강한 재질로 된 폐쇄형 사육시설 및 탈출 방지용 자물쇠 설치 * 올라갈수 있는 나뭇가지 등 설치	25%
	콜롬비아골드테구	- 가로 2m 이상, 높이 1.5m 이상 * 충격에 강한 재질로 된 폐쇄형 사육시설 및 탈출 방지용 자물쇠 설치	25%

3. 기준 날개폭 및 기준 크기

가. 조류 기준 날개폭

국명	학명	날개폭 크기
참매	<i>Accipiter gentilis</i>	날개폭 1.31m
말뚝가리	<i>Buteo buteo</i>	날개폭 1.37m
흰꼬리수리	<i>Haliaeetus albicilla</i>	날개폭 2.45m
참수리	<i>Haliaeetus pelagicus</i>	날개폭 2.5m
붉은허벅지말뚝가리	<i>Parabuteo unicinctus</i>	날개폭 1.21m
달마수리	<i>Terathopus ecaudatus</i>	날개폭 1.9m
독수리	<i>Aegypius monachus</i>	날개폭 2.95m
큰콘돌	<i>Vultur gryphus</i>	날개폭 3.5m
붉은코뿔새	<i>Aceros nipalensis</i>	날개폭 1.2m

나. 기준크기

국명	학명	기준크기
삼악어	<i>Crocodylus siamensis</i>	2.5m
안경카이만	<i>Caiman crocodilus</i>	2m
미시시피악어	<i>Alligator mississippiensis</i>	4m
뉴기니아악어	<i>Crocodylus novaeguineae</i>	3m
바다악어	<i>Crocodylus porosus</i>	5m
나일악어	<i>Crocodylus niloticus</i>	4m
세렝겔악어	<i>Tomistoma schlegelii</i>	3.5m
드와프카이만	<i>Osteolaemus tetraspis</i>	1.2m
난쟁이카이만	<i>Paleosuchus palpebrosus</i>	1.2m
매끈이카이만	<i>Paleosuchus trigonatus</i>	1.2m
돼지코거북	<i>Carettochelys insculpta</i>	등갑길이 0.7m 등갑너비 0.5m
악어거북	<i>Macrochelys temminckii</i>	등갑길이 1.0m 등갑너비 0.7m
남생이	<i>Mauremys reevesii</i>	등갑길이 0.3m 등갑너비 0.2m

4. 비교

가.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목, 말목, 고래목, 코끼리 및 생태적 특성상 실외활동을 주로 하는 생물종의 사육면적은 실내 사육장과 야외 방사장 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나. 실내 사육시설이란 지붕, 벽면 및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갖추어 사육동물의 외부접촉이 차단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실내 사육시설의 기준면적보다 넓은 별도의 실내외 전시실 또는 야외 방사장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실내 사육시설의 면적이 기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 1)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 2)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 위기종 관리·보호 시설
- 3)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른 동물치료소
-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
- 5)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71조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
- 6)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등 허가서 (CITES permit)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OR FLORA

1. 허가번호 Original Permit/Certificate No. R.O.K	
2. 유효기간 Valid until	
3. 수입자: 성명·주소·국가명 Importer: Name and address, country	4. 수출자/재수출자: 성명·주소·국가명 Exporter/re-exporter: Name and address, country
3a. 목적지 국가명 Country of destination	4a. 신청인: 성명·주소·국가명 Permittee: Name and address, country
5. 특별사항 Special conditions VALID FOR MULTIPLE SHIPMENTS. PERMITTEE TO RETAIN ORIGINAL For live animals this permit or certificate is only valid if the transport conditions conform to the guidelines for transport of live animals or plants, in the case of air transport, the IATA live animals Regulation	
5a. 거래목적 Purpose of the transaction(see reverse)	
7\8. 학명(속명·종명) 및 통속명 Scientific name(genus and species) and Common Name of Animal or Plant	9. 표본 기재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성별·연령) Description of specimens, including identifying marks or numbers(age and sex if alive)
10. 협약부속서 번호 및 출처 Appendix No. and source (see reverse)	
11. 표본 수량(단위 포함) Quantity(including unit)	
11a. 총 수출 할당량 Total exported Quota	
12.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a. 최종 재수출 국가명 Country of last re-export	
허가번호 Permit No. 발급일 Date	
허가번호 Certificate No. 발급일 Date	
★재수출의 경우 생물이 야생에서 포획·채취되거나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국가를 말합니다. Country in which the specimens were taken from the wild, bred in captivity or artificially propagated(only in case of re-export)	
13. 허가서 발급기관 This Permit/certificate is issued by:	
장소 Place	날짜 Date
날인 및 서명 Security stamp, signature and official seal	
14. EXPORT ENDORSEMENT:	
15. 선하증권 \ 항공화물운송장번호 Bill of Lading/Airway-Bill Number	
See block 7	Quantity
A	수출항 port of export
B	날짜 Date
C	16. 신청인의 서명 Signature
날인 Official seal and title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문서의 종류에 맞게 [] (수출, 재수출, 수입 및 기타)에 표시하되, 기타 란에 표시할 경우 문서의 종류를 적습니다(허가번호는 관리당국에 의해 각 문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2. 수출 허가서와 재수출 허가서의 경우 문서의 만료일은 문서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수입허가서는 1년)입니다. 다만, 매 당사국 총회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종의 경우 수출입 허가서의 만료일은 해당 협약 발효일 전까지입니다.
- 3a. 국가명은 공식 명칭을 적습니다.
5. 특별사항에는 국가 법률이나 허가서 발급 관리당국의 선적 관련 특별 조항이 언급되고, 특정정보의 생략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5a. 거래목적에 사용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T-상업용, Z-동물원용, G-식물원용, Q-서커스 및 순회전시(공연)용, S-과학 연구용, H-수렵기념품, P-사적사용, M-의학용, E-교육용, N-야생용, B-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용, L-법집행·법의학용
6. 허가서 발급 관리당국의 명칭·주소·국가날인·국가명이 미리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 7./8. 협약 부속서나 당사국 총회에서 인정된 참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생물의 학명(속명·종명·아종명)과 허가서 발급국가의 생물 통속명 적습니다.
9. 거래되는 표본을 가능한 정확하게 기입(살아있는 동물, 가축, 파생물, 지갑, 신발 등)해야 하며, 만약 표본에 표지(태그, 식별표지, 가락지 등)가 있다면 그것이 당사국 총회 결정서에 의해 요구되는 표본(목장사업을 위한 표본, 당사국 총회에서 허가된 할당량에 필요한 표본, 상업용으로 포획사육된 부속서 I에 기재된 종의 표본)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표지의 종류와 번호를 기입하고,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성별과 연령을 적습니다.
10. 해당 종이 들어있는 협약 부속서 번호(I, II 또는 III)를 적고, 출처에 사용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W 야생의 표본
R 목장의 표본
D 상업용으로 포획사육된 부속서 I에 기재된 표본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출한 표본(부분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A 식물의 경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7조제5항 및 제11차 당사국 총회 결정서(Conf. 11. 11)에 따라 인공재배한 표본(상업용으로 인공재배하지 않은 부속서 I, II, III 기재 표본으로서, 부분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C 동물의 경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7조5항 및 제10차 당사국 총회 결정서(Conf. 10. 16)에 따라 인공사육한 표본(상업용으로 인공사육하지 않은 부속서 I, II, III 기재 표본으로서 부분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F 인공사육환경에서 출생한 동물(제2세대 또는 그 자손)로서 제10차 당사국 총회 결정서(Conf. 10. 16)에서 정의한 “포획사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표본
Y 지원 생산(assisted production)을 통해 확보된 식물, 그 부분 및 파생물로서 제18차 당사국 총회 수정 결정서(Conf. 11. 11(Rev CoP18))를 만족하는 표본
U 출처미상 표본(정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I 몰수 또는 압류된 표본
O 사전 협약된 표본(다른 출처코드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11. 수량과 단위는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annual reports(<http://cites.org>)' 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11a. 허가서의 표본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수출 표본 총수와 그 종의 해당연도의 할당량을 기입(예. 500/1000)하되, 이것은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국가의 할당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12. 생물이 야생에서 포획되거나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국가명, 수출국의 허가번호와 허가서 발급일을 적되, 전체나 부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이 난은 재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12a. 이 문서를 발급하는 국가에 표본을 재수출한 최종 재수출국가명, 최종 재수출국의 재수출 허가서 번호와 그 허가서 발급일을 적습니다(전체나 부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되, 이 난은 이전에 재수출된 표본이 재수출될 경우만 적습니다)
13. 허가서 발급기관을 적되, 기관명은 공식 명칭으로 적고,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합니다.
14. 수출 또는 재수출 시 선적 조사기관이 적고,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표본의 수량을 적습니다.
15. 운송수단에 따라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를 적습니다.
16.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허가서는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이 문서는 협약에서 통용되는 세 가지 언어(영어, 스페인어, 불어) 중 하나로 쓰여지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 세 가지 언어 중 한 가지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수출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표본을 같은 문서 내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 표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서를 사용 후에는 반드시 수입국의 관리당국에 반납해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해당생물 (악기재료) 명세	보통명	학명	
	생물 원산지	악기 생산지	
	협약 적용시점	해당 부속서 [] I 급 [] II 급 [] III 급	
해당 악기 명세	악기의 종류		제작사
	획득한 지역		
	입수 시기		
	입수 경위		
	명세(일련번호 등 악기 식별을 위한 세부 특징)		
기타	인증서 발급 후 사용계획(개인적 이용, 유·무료 공연, 전시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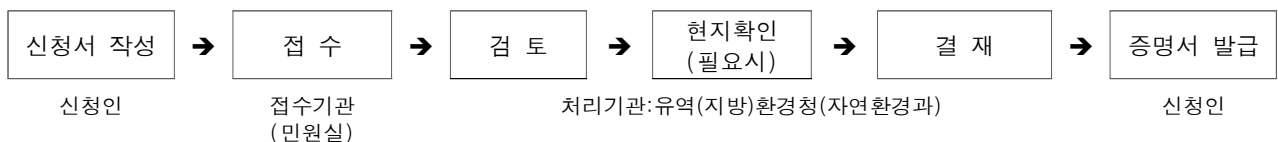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1장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증명번호 제 호 (Original certificate No.)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Certificate for Musical Instrument Derived from CITES Speci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상 호 (명 칭) (Trade Name)					
성 명 (대 표 자)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 소 (사업장 소재지) (Address)					
악기 상세 명세 Species Concerned					
국제적 멸종위 기종 재 료 명세	보통명 (Common Name)			학명 (Scientific Name)	
	원산지 (표본) (Country of Origin)			생산지 (제품) (Country of Production)	
	협약 적용시점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becomes applicable to the species concerned)			해당부속서 (Appendices)	[] I [] II [] III
악기의 종류 (Type of Musical Instrument)					
입수시기 (Date of Acquisition)					
획득한 지역 (Place of Acquisition)					
입수 경위 (Method of Acquisition)					
명세 (Details)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임을 인증하며, 본 인증서가 인증하는 표본의 비상업적 이용 및 다수의 국경이동을 허가하고 인증서 소지자의 국내 거주지 외의 판매, 거래 또는 폐기를 금지한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Paragraph 1 of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3, Subparagrap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Article 21(2),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the musical instrument that is subject to this permit is proved to be derived from CITES species, and the specimen covered by this certificate, which permits multiple cross-border movements, is for non-commercial use and may not be sold, traded or otherwise disposed of outside the certificate holder's State of usual residence.)					
년 월 일					
유 역 환 경 청 장 (지방환경청장)				직인	
The Certificate is issued by Place Date Signature Official seal and title					

210mm×297mm[백상지(120g/㎡)]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신고서(신고확인증)
[]양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육장소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육(예정)장소	
종 류	수 량		
양도사유	수입허가용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 []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양도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양 도한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을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용계획서, 양도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 자 르 는 선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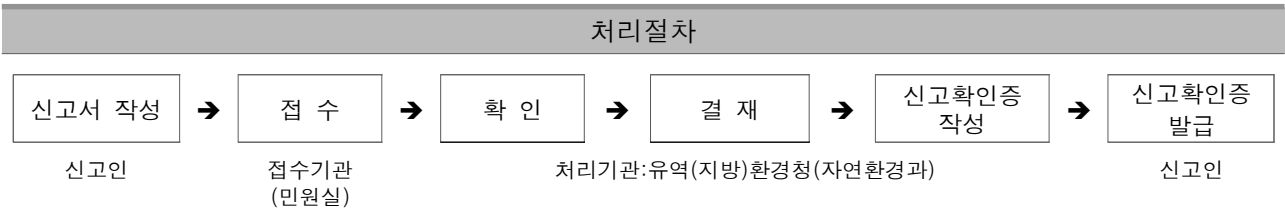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신고확인증
[]양수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인]

귀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서(신고확인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육장소			
종류			
수량			
폐사·질병사유			
처리계획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질병 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수입허가증 등 폐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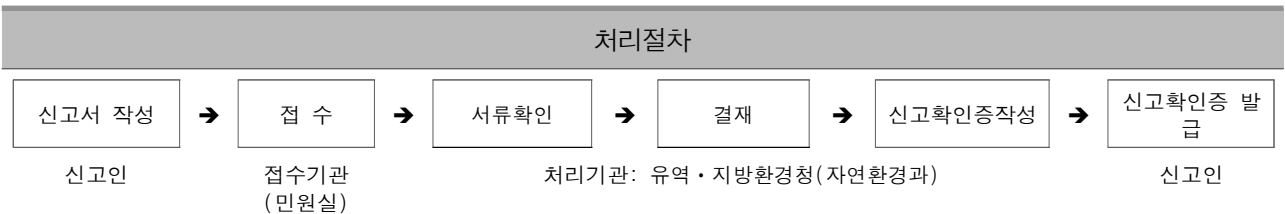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확인증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인]

귀하



수렵면허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렵면허증 종류	[] 1종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령 방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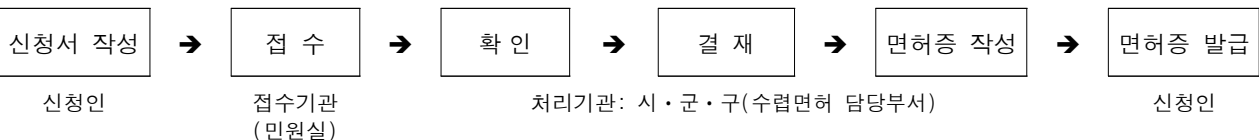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 갱 신
수렵면허 [] 재 발 급 신청서
[] 기재사항변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갱신) 5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즉시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수렵면허의 종류	[] 1종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렷 방 법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유효 기 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2. 재발급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 10,000원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군·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환경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① ----- ----- ----- ----- ----- ----- ----- ----- ----- ----- ----- <u>지방</u> <u>환경관서의 장</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	② <u>지방환경관서의 장</u> ----- ----- ----- ----- ----- ----- ----- ----- -----

여야 한다.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
· 폐사 등 신고) ① 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
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별
지 제25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
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
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
26호서식의 수입·반입된 국제
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

-----.

제2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
· 폐사 등 신고)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계획서, 양도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
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경
우만 해당한다)

② -----

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신 설>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 략)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

1. (현행과 같음)

2. 사진, 영상 등 폐사-- 자료

3. 수입허가증 등 폐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발행된 -----

-----.

-----.

가.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총기 소지의 걱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
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나. -----

--- 소견서(제1종 수렵면
허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
정한다)

② -----

----- . 다만, 제1종 수렵면허와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소지하고 있고 한 종의 수렵면허 갱신 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다른 종의 수렵면허도 이 기간 내에 함께 갱신신청할 수 있다.

1. ----- 발행된 -----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충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충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
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 「도로
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 4. (생략)

<신설>

③ (생략)

-----.

가.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
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으
로 한정한다). -----

-----.

나. -----

--- 소견서(제1종 수렵면
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갱신하
는 경우 두 수렵면허의 유효기
간은 갱신 시기가 먼저 도래한
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참고

별표12 개정안 전문

행정처분의 기준 (제78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의 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1항제2호 법 제23조의 2제1항제3호	경고 허가취소	허가취소		
거.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수렵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가)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면허취소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